

의안번호	제 72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369 회)

**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0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0월 3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저출산 대책 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

2. 주요내용

- 저출산 대책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한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(안 제15조)
 - 행정국장 → 저출산 대책 주무부서의 실국장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 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저출산 대책 주무부서의 실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<u>행정국장</u>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1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, -- ----- <u>저출산 대책 주무부서의</u> <u>실국장</u>----- -----.</p>